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Cp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3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4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5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<u>16. Cp2-E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</u>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<u>17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<u>18. S-P2(퇴직연금)클래스 수익증권 : 집 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 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C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3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4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5. Cp2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6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7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8. S-P2(퇴직연금)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
<p>제38조(보수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8조(보수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C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2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13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</p>

	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6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신 설>	<p><u>14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7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신 설>	<p><u>15. Cp2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신 설>	<p><u>16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신 설>	<p><u>17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신 설>	<p><u>18. S-P2(퇴직연금)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6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제49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	제49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

<p>익증권저축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익증권저축약관” 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계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p>